

3. 총무계획(교통실시) 수립 및 시행
4.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창고업(화물유통촉진법)에 관한 사무
6.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
8.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10.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11.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확인 관리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 포함) 주기적 신고 처리
13.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14. 화물자동차 유류 복지카드 승인 처리
15. 사업용 운수사업자(버스, 택시, 화물) 전국 전산망 등재
16.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화물터미널 설치계획 추진
17. 자동차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1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19.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령 등 자동차에 관한 사항
20. 무허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1. 자동차의 개선명령
22. 자동차정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23. 차고시설 신고업무
24. 사업장 이전시설 변경등록업무
25.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
26.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정처분
27.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28.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시요구등 책임보험에 관한 업무
29. 자동차 책임보험등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 증명서류의 제출명령
30.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사항 조회
3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32. 이륜차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34.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35. 법령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36.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37. 무적, 무등록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 신규, 부활 등록

39. 자동차 이전, 단순 변경등록
40.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승인
41.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42. 계속검사 경과차량 검사명령
43. 법규위반차량 고발조치
44. 자동차관련(등록,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
45. 자동차 제증명(등록원부, 말소) 발급
46. 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회수
47.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48.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
49. 자가용 사용신고 처리
50. 자동차 저장, 압류 등록 및 해제
51. 자동차 봉인의 관리
52. 자동차 검사, 점검 연기신청 처리
53. 자동차관련 승인대장 관리
54. 자동차 말소등록
55. 자동차 등록증(봉인) 재교부
56. 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고, 제29조(중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보건소)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중전의 제25조)중 “제37호부터 제38호까지”를 삭제하고, “제39호부터 제40호까지”를 “제37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하며, “제39호부터 제4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 관한 사항
40.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1. 암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2. 안전강사업에 관한 사항
43. 회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44.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45.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46. 방문보건에 관한 사항
47.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제31조(중전의 제26조)중 “제15호부터 제1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1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12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성과별 구분란중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하고, 별표3 성과별 구분란중 “재무과”를 “건설과”로 하며, “주민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23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 제4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23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에 송부하여”를 삭제한다.

⑤ 「인천광역시서구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5항 및 별지제1호서식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7조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며, 제7조제4항제1호, 제7조제7항, 제8항, 제13조제1항중 “법무의회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중 “법무의회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하며, 제4조제2항중 “법무통계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서구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감사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서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3호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서구구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4조제2항중 “문화공보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5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공보담당”을 “구정홍보담당”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4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1제1항, 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원담당”을 “민원여권담당”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중 “건축허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학 재

2007년 6월 19일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규칙 제619호, 제643호, 제646호, 제668호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한 정원 27명의 존속기한은 폐지한다.